

세부담 이렇게 바꾼다

(4)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한도 8억설정 배우자 면세점 대폭 높여

안재승 기자

재무부의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보면 배우자에게는 상속·증여세를 가능한 한 물리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낮춘 것이나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의 면세 한도를 무려 8억원으로 설정하고 증여세 면제 범위도 크게 확대한 것 등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재산 형성은 부부 공동의 힘을 쏟은 결과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법도 바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이번 개편안은 현행 10~50%의 5단계로 돼 있는 상속세율에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면서 4단계로 축소하기로 했고 15~55%의 5단계로 돼 있는 증여세율도 역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면서 4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세율 인하로 부의 세습이 더욱 쉬워졌다는 우려에 대해 재무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야말로 탈세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며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세율의 적정화와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재무부의 기대대로 세율 인하가 세원 양성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현행처럼 상속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억+(결혼연수×1천2백만원)을 계산공제받거나 아니면 신설된 최고 공제한도인 8억원 범위 안에서 법적으로 상속받은 상속액을 공제받는 방법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듯이 거의 대부분 8억원의 한도까지 상속받는 게 계산

상 유리하다. 사례처럼 20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는 우선 현행 제도인 기초공제 1억원, 자녀공제(2인 범위에서 자녀 1인당 2천만원) 4천만원, 역시 1억원이 한도인 주택상속공제를 받은 뒤 신설된 배우자공제 8억원을 더 받으면 과세표준이 9억6천만원으로 산출되고 여기에 인하된 세율 40%를 곱하면 상속세액은 2억9천9백만원으로 결정된다. 현행대로 결정한 상속세액 4억6천5백만원보다 세부담이 35.7% 경감된 것이다.

배우자 증여세공제액 역시 3천만원+(결혼연수×3백만원)에서 5천만원+(결혼연수×5백만원)으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 이번 개편안에서는 농지의 경우 주택상속공제 등과 같은 다른 물적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퇴직수당의 상속세공제액도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안 가운데 공제금액 및 한도인상은 내년부터, 세율인하는 9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끝>

사례)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이며
자녀 2인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 변화
(단위:백만원)

	현행	개편안
① 상속재산가액	2,000	2,000
② 공제액		
기 초 공 제	100	100
※ 배우자 공제	460	800
자녀 공 제	40	40
+ 주택상속공제	100	100
	700	1,040
③ 과세표준(②-①)	1,300	960
④ 세율※	50%	40%
⑤ 세액(③×④)	465	299

※:이번에 개편된 부분